

예산총칙

2023년도 추경 2 회

제 1 조 2023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| 구 분 | 세입·세출예산총액 | 일시차입한도액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합 계 | 581,517,452 | 17,445,524 |
| 일반회계 | 572,581,862 | 17,177,456 |
| 특별회계 | 8,935,590 | 268,068 |
| 기타특별회계 | 8,935,590 | 268,068 |
|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| 392,656 | 11,780 |
| 의료급여기금 | 401,357 | 12,041 |
|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 | 105,605 | 3,168 |
| 지하수관리 | 38,711 | 1,161 |
| 운서토지구획정리사업 | 1,400 | 42 |
| 기반시설 | 339,084 | 10,173 |
| 주차장 | 7,656,777 | 229,703 |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 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"계속비사업조서"와 같다.

제 4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"명시이월사업조서"와 같다.

제 5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61,651천원으로 한다.

제 6 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22,6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7 조 회계연도 중의 보조금, 교부금(세)은 예산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한다.

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,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,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, 상환금(차입금, 예수금) 상호간에는 이용할 수 있다.